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710
----------	-------

발의연월일 : 2026. 8. 24.

발 의 자 : 윤준병 · 박희승 · 김의겸
朴芝源 · 이춘석 · 이재관
박용갑 · 박홍배 · 전용기
홍기원 · 최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지난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 부모 아동을 위해 국가에서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시행 ·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상 국가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정액으로, 이는 아동의 연령과 실제 필요한 양육비,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법원이 결정한 양육비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더라도 환수하는 양육비는 매우 저조한 상태로, 실제 2026년 7월 기준 양육비 선지급 회수금은 10%에 머물러 있어 선지급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에서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양육비 선지급에 있어 단순 정액 지급이 아닌 통상적인 양육비, 미성년 자녀의 수 및 연령,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양육비 채무액 및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하도록 하고,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대상인 양육비 채무자로 하여금 회수하여야 하는 양육비 선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천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에 있어 통상적인 양육비, 미성년 자녀의 수 및 연령,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양육비 채무액 및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하도록 규정함(안 제21조의7제2항).

나.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대상인 양육비 채무자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회수하여야 하는 양육비 선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1조의10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7제2항 후단 중 “제5조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한다”를 “통상적인 양육비, 미성년 자녀의 수 및 연령,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양육비 채무액 및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한다”로 한다.

제21조의10제2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회수절차 및 방법, 회수금 처리방식”을 “제1항에 따른 회수의 방법·절차,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원천공제와 회수대상 선지급금 납부, 회수된 양육비 선지급금의 처리방식”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행관리원의 장은 같은 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대상인 양육비 채무자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회수하여야 하는 양육비 선지급금(이하 “회수대상 선지급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천공제액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에서 회수대상 선지급금의 금액 및 소득의 종류·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회수대상 선지급금을 원천공제하게 하려는 경우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양육비 채무자와 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회수대상 선지급금의 금액 및 원천공제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행관리원의 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회수대상 선지급금을 원천공제하지 아니하거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대상 선지급금을 직접 회수하여야 한다.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회수대상 선지급금을 소득에서 원천공제한 경우(원천공제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책사유가 없는 한 양육비 채무자가 회수대상 선지급금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⑥ 이행관리원의 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회수대상 선지급금을 원천공제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그 원천공제된 회수대상 선지급금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21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21조의10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의7(양육비 선지급의 결정) ① (생 략) ②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지급 기간,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이 경우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은 <u>제5조에 따른 양육비</u> <u>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하</u> <u>다.</u> ③ · ④ (생 략) 제21조의10(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① (생 략) <u><신 설></u>	제21조의7(양육비 선지급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u>통상적인 양육비, 미</u> <u>성년 자녀의 수 및 연령, 양육</u> <u>비 채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양</u> <u>육비 채무액 및 양육비 채무자</u> <u>의 소득·재산 등을 종합적으</u> <u>로 고려하여 책정한다.</u>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의10(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행관</u> <u>리원의 장은 같은 항에 따른</u> <u>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대상</u> <u>인 양육비 채무자가 「소득세</u> <u>법」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어</u> <u>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u> <u>는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u> <u>(「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u>

<신 설>

<신 설>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회수하여야 하는 양육비 선지급금(이하 “회수대상 선지급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천공제액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에서 회수대상 선지급금의 금액 및 소득의 종류·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회수대상 선지급금을 원천공제하게 하려는 경우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양육비 채무자와 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회수대상 선지급금의 금액 및 원천공제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행관리원의 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회수대상 선지급금을 원천공제하지 아니하거나 폐업 등 대통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회수절차 및 방법, 회수금 처리방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대상 선지급금을 직접 회수하여야 한다.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회수대상 선지급금을 소득에서 원천공제한 경우(원천공제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책사유가 없는 한 양육비 채무자가 회수대상 선지급금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⑥ 이행관리원의 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회수대상 선지급금을 원천공제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그 원천공제된 회수대상 선지급금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회수의 방법·절차,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원천공제와 회수대상 선

으로 정한다.	<u>지급금 납부, 회수된 양육비 선</u> <u>지급금의 처리방식</u> ----- -----.
---------	--